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7899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1787	정진욱의원	2025.7.2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2322	허성무의원	2025.8.2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2213033	정진욱의원	2025.9.16.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3666	박성훈의원	2025.10.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2213686	박지혜의원	2025.10.23.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

3. 10.)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3. 12.)에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통상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

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함  
(안 제2조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 다. 주채권은행이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라. 지원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3제4항 신설).
-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8조 등).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0조”를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제10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을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수집·분석”을 “수집·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의3(중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산업별·지역별 선도기업, 산업·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로 한다.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제10조”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용위험 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제28조제2항제2호 중 “증설”을 “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제1호 중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3”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재편계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 9. (생략)</p> <p>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 조사와 통계자료의 <u>수집·분석</u>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u>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제10조</u>----- ----- -----.</p> <p>7. ~ 9.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 ----- ----- ----- ----- ----- -----<u>수</u> <u>집·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u>-----.</p>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심층 조사를-----  
-----  
-----  
-----  
-----  
-----  
-----  
-----  
-----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신 설>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 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  
-----  
-----산업별  
· 지역별 선도기업, 산업·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지역별 사업재편지원  
협의회-----  
-----

을 마련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신설>

11. (생략)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3년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 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 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업)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28조(자금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  
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8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  
음)



<p>④ (생략)</p> <p>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 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 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p> <p>1. 제8조에 따른 <u>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u></p> <p>1의2. <u>제8조의2</u>에 따른 사업재 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 무</p> <p>2. ~ 6. (생략)</p> <p>② (생략)</p>	<p><u>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6조(업무의 위탁) ① ----- ----- ----- ----- ----- ----- --.</p> <p>1. -----<u>기초조사 및 심층조사</u></p> <p>1의2. <u>제8조의3</u>----- -----</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